문서번호	문화체육과-27892
결재일자	2015.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문화관광담당	문화체육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지은	이명근	장순봉	도일환	代손정수	10/06 김영배
협 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의정담당 안귀성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2015. 9

교육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Ⅰ 추진배경

☐ 민선6기 출범으로 교육·문화·역사지구의 정체성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 서울시 최초로 문화예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문화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 법적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4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 실시

☐ **지역문화 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의 지원

Ⅲ 주요 제정내용

☐ **제정목적**

○ 성북구의 문화예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자문 및 계획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사항 규정

☐ **주요기능**

○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성북구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수와 여가활동,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 보호와 활용 등 가치창조에 관한 사항

○ 문화적 도시재생과 성장전략 및 성북구민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성북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타 창조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구의회의원(2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문화정책, 예술교육, 도시재생, 생활예술·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위원회내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둠

① 문화정책분과위원회 : 문화정책 일반, 문화행정 및 거버넌스, 법제도 개편 등 담당

② 문화다양성분과위원회 : 문화다양성 가치 확대, 제도화 등 담당

③ 도시재생분과위원회 : 문화·교육적 가치에 기반한 도시재생 정책 등 담당

④ 생활예술분과위원회 : 생활창작, 문화예술교육, 주민문화 등 담당

▢ 위원회의 역할

1 성북구의 문화예술기본계획 수립(5년 플랜)

○ 성북구의 문화환경 개선과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예술교육, 생활문화, 마을미디어, 역사문화, 도시재생 공간분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성북구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 문화적으로 성북구가 얼마나 다양한지 영역별 지표 선정 및 실태조사 실시

⇒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3 성북구 문화영향평가

○ 성북구 문화예술인프라 환경의 주민만족도 평가,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환경평가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 및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예정 등

4 성북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문

○ 노후·불량 주거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 등 공동체 커뮤니티 부재 지역인

○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지역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다른 자문역할 등

⇒ 지역역량 강화사업, 문화·경제·주거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

Ⅳ 그 동안 추진경과

☐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구성을 위한**

○ 2015. 1월 :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구청장 방침

○ 2015. 2. 6 :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2015. 3.16 :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위원회 내 4개의 분과위원회 설치(문화정책·문화다양성·도시재생·생활예술)

○ 2015. 5.11 :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분과위원장과의 간담회

-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워크숍 개최 결정

○ 2015. 6월 :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조례안 초안작성

○ 2015. 7. 8 : 위원회 워크숍 개최시 수정안 작성

○ 2015. 9.21 : 성북구창조문화도시위원회 9월 정례회의시 최종안 의결

Ⅴ 향후 추진일정

☐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 2015. 10. 1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015. 10월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15. 10. 7 : 제237회 임시회(보건복지위원회) 조례제정에 따른 설명회**

○ 2015. 11월 : 조례안 성북구의회 제출

○ 2015. 12월 : 조례 심의의결 및 공포

Ⅵ 행정사항

☐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홍보전산과**

☐ **성북구의회 안건 상정전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기획예산과**

☐ **조례제정에 따른 설명회(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구의회사무국**

☐ **위원회 구성에 따른 구의회의원 2명 추천 - 구의회사무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15 -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도시재생 등 모든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는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규정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규정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규정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 2241-2601, FAX : 2241-6536, E-mail : leemeoung@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4. 기타사항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241-2601, FAX : 2241-6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조례제정안
2) 의견제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북구의 문화예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문화예술이 성북구의 창조도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자문 및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이 마을민주주의의 발전과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지역경제, 미디어, 여가 등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며, 문화의 다양성,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일상 속에 스며드는 생활예술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창조문화도시”란 도시의 미래발전에 있어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중시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적 자원과 주체가 공동체문화, 생태문화, 역사문화, 일상문화, 사회적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모두가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북구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자문 및 의결한다.

1.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북구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수와 여가활동,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 보호와 활용 및 가치창조에 관한 사항
5. 문화적 도시재생과 성장전략에 관한 사항
6. 성북구민예술교육 활성화 및 생활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7. 성북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창조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역할)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2인으로 하며, 위원은 구의회의원(2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문화정책, 예술교육, 도시재생, 건축행정, 축제기획, 생활예술·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내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별도로 두되,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정책분과위원회** : 성북구의 문화예술기본진흥계획 수립, 조례 등 법제도 개편, 성북구 문화영향평가 등
2. **문화다양성분과위원회** : 성북구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다문화 및 이주민 문제 대안 예술문화, 문화다양성 가치확대, 고령화·노인·청소년 등 세대들의 문화다양성 분야
3. **도시재생분과위원회** : 역사문화, 교육, 자연생태,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도시재생 정책, 사회적 기업과 문화예술과의 협조체계 등
4. **생활예술분과위원회** : 생활창작, 문화예술교육, 주민문화 등 주민들의 아마추어 생활예술 실태파악 및 활성화 지원, 일상창작, 문화예술마을축제, 마을미디어, 도서관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공동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결원시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되, 첫째월은 전체회의, 둘째월은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문화정책 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 위원회 포럼을 연 1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분과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기본진흥계획 수립 및 성북구 창조문화도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표개발 및 공론화 등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